



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규정

규정번호	KTC-F-10	1/6
제정일자	2010.03.01	
개정일자	2016.12.19	
관리부서	교 학 처	

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규정

(제정 2010. 3 . 1.)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분진학원(이하 “법인” 이라 한다) 정관 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대학 전임교원의 정년보장 심사를 위한 정년보장 교원임용 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의 위원은 교학처장과 우리대학 전임교원 중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교수로 구성한다.(개정 2016.12.19)

②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(개정 2016.12.19)

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제 3 조 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중 자신이 정년보장 심사대상일 경우에는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며, 이 경우 위원장은 참석할 수 없는 위원수 만큼 감한 수를 재적위원 수로 한다.

단, 위원중 과반수가 넘는 수가 정년보장 심사대상자인 경우에는 여석만큼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제 4 조 (심사기준 및 방법) ① 정년보장 교원임용 심사는 대상교원에 대하여 [별표 1]의 정년보장교원심사 교수업적평가표에 의한 평가 및 [별표 2]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신청서를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[별표 3]의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평정표에 따라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사·평정한다.(개정 2013.08.08.)

②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는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사·평정한 결과를 심의한다.(개정 2013.08.08.)

③ 위원회는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[별표 1] 교수업적평가결과의 충족여



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규정

규정번호	KTC-F-10	2/6
제정일자	2010.03.01	
개정일자	2016.12.19	
관리부서	교 학 처	

부를 확인하고, [별표 3]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평정결과 평균 “B” (16점) 미만의 대상 교원은 정년보장대상에서 제외하며, 교수업적평가는 교수업적평가세부기준에 따른다.(개정 2013.08.08.)

제 5 조 (심사자료) ①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원인사기록카드 사본
2. 교수업적평가 심사평정표 및 평정 자료
3.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

제 6 조 (회의록작성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은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

제 7 조 (간사) 정년보장 교원임용 심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교원인사담당자를 간사로 둔다.

제 8 조 (기타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정년보장교원의 임용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

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규정

규정번호	KTC-F-10	3/6
제정일자	2010.03.01	
개정일자	2016.12.19	
관리부서	교 학 처	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

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규정

규정번호	KTC-F-10
제정일자	2010.03.01
개정일자	2016.12.19
관리부서	교 학 처

4/6

[별표 1] (개정 2013.07.29., 2013.08.08)

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 교수업적평가표

피평가자	
소 속	
직 급	
성 명	

평가자 (교수업적평가위원)	
위원	(서명)

항 목	세 부 항 목	배점	평 점					
			A	B	C	D	E	
1	학문연구 (30점)	① 연구실적	10	10	8	6	4	2
		② 연구실적물의 질	10	10	8	6	4	2
		③ 교수연수실적(연수 및 산업체현장연수) 및 연구프로젝트 참여	10	10	8	6	4	2
	소 계	30						
2	학생교육 (30점)	① 강의여건조성실적 및 정원관리	15	15	12	9	6	3
		② 교육과정개발실적 및 산학군관협력실적	10	10	8	6	4	2
		③ 교원지위향상실적(포상 및 징계사항)	5	5	4	3	2	1
	소 계	30						
3	학생지도 ·봉사 (25점)	① 학생취업 지도실적	10	10	8	6	4	2
		② 현장실습지도/동아리지도 교수활동실적	5	5	4	3	2	1
		③ 사회봉사활동 / 대학발전기여 실적	10	10	8	6	4	2
	소 계	25						
4	산학협력 (15점)	① 취업지도	8	8	6	4	3	2
		② 산학협력활동	7	7	5	4	3	2
	소 계	15						
총 계		100						
적격 여부 판정		적격() 부적격()						



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규정

규정번호	KTC-F-10	5/6
제정일자	2010.03.01	
개정일자	2016.12.19	
관리부서	교 학 처	

[별표 2] (개정2013.8.8)

정년보장 교원임용 심사신청서

항 목	세부내용
① 교육성과개선을 위한 노력	<input type="checkbox"/> 신입생충원 <input type="checkbox"/> 재학생충원 <input type="checkbox"/> 취업률제고 <input type="checkbox"/> 중도탈락율 <input type="checkbox"/> 학과변경현황(폐과⇒신설)
② 대학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	<input type="checkbox"/> 대학발전을 위한 공헌도 - 장학금 및 발전기금(물품)기부 및 유치 <input type="checkbox"/> 지역발전을 위한 공헌도 - 산학협력활동 및 지역과의 협력활동 - 봉사활동
③ 교육자로서의 품위 유지를 위한 노력	<input type="checkbox"/> 대내·외 포상실적 <input type="checkbox"/> 징계 및 민원발생 여부 <input type="checkbox"/> 업무이행준수 여부
④ 교수연구 및 학생지도	<input type="checkbox"/> 교육연구향상 실적 <input type="checkbox"/> 강의개선활동 <input type="checkbox"/> 학생진로 및 상담활동

상기 본인은 정년보장 교원임용 심사위원회규정에 의거하여 위와같이
정년보장 교원임용심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자 소속: 직급 : 성명 : (인)

1. 해당항목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술하여야한다.
2. 현직급 임용기간내의 사항만을 기재하고,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.
3.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사용 할 수 있다.



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규정

규정번호	KTC-F-10	6/6
제정일자	2010.03.01	
개정일자	2016.12.19	
관리부서	교 학 처	

[별표 3] (개정 2013.07.29., 2013.08.08)

정년보장 교원임용 심사평정표

피평정자	
소 속	
직 급	
성 명	

평 정 자 (교수업적평가위원)	
위원	(서명)

항 목	세 부 항 목	배점	평 점				
			A	B	C	D	E
평정사항	① 교육성과개선을 위한 노력	5	5	4	3	2	0
	② 대학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	5	5	4	3	2	0
	③ 교육자로서의 품위 유지를 위한 노력	5	5	4	3	2	0
	④ 교수연구 및 학생지도	5	5	4	3	2	0
	소 계	20					
의견							